

의안번호	제937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영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7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오영탁,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조성태

1. 제안이유

-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지역 특성을 살린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목적 규정(안 제1조)
- 웰니스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광·보건·웰니스 분야를 융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로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규정(안 제3조)
-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 내용 명시(안 제5조)
- 웰니스관광 관련 시설 및 관광상품의 지정 및 취소 기준과 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관광”이란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환경, 전통요법, 대체의학, 웰니스 시설, 힐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관광·보건·웰니스 분야가 융합된 형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웰니스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2. 웰니스관광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웰니스관광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우수한 관광지,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웰니스관광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웰니스관광 지정이 부적절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

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관광 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비용추계서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의 추진)
-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실태조사)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2030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수행하고 웰니스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5조의 사업을 국비지원규모*를 고려하여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나. 추계 결과 : 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 1,000백만원 시작으로 향후 5년간 6400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합계
예 산	1,000	1,200	1,200	1,500	1,500	6,400

- 산출내역 : 개소당 *200백만원

- * 전문가활용비, 홍보물제작배포, 자원발굴 및 컨설팅, 홈페이지 유지보수, 국내여비 등
- 4차년도(2029년)부터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산정함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지원 개소수	5	6	7	11	11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재원 조달		1,000,000	1,200,000	1,200,000	1,500,000	1,500,000	6,400,000
의존 재원	소 계	500,000	600,000	600,000	750,000	750,000	3,200,000
	보조금	500,000	600,000	600,000	750,000	750,000	3,2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180,000	180,000	225,000	225,000	960,000
	지방세	150,000	180,000	180,000	225,000	225,000	96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350,000	420,000	420,000	525,000	525,000	2,24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